

1. 기록관리혁신의 과제와 전망

- 거버넌스 기록관리

김 익 한*

- 1. 민주주의 발전의 현상
- 2. 거버넌스 기록관리의 이슈들

주제어 : 거버넌스 기록관리, 거버넌스(governance), 기록관리혁신, 컨설팅(consultation), 옴부즈만(ombudsman),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 참여, 협치, 공개

1. 민주주의 발전의 현상

우리는 최근 짧은 기간 동안 또 다른 형태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월드컵의 축제와 질서, 정당 동원을 넘어선 국민의 선거 승리, 그리고 청와대의 담이 낮아지고 국회에도 의원 전용 승강기가 없어지는 현실을 목도하였다. 비판도 있고 막무가내의 반대도 있지만, 잠시 되돌아보기

*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주요논저 “특성화에 기반 한 시·군 자료관 설립 방안 연구-경기도를 사례로-” 한국비블리아 15-1(2004); “기록관리를 기반으로 한 통합형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 방향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1-2(2004); “기록의 속성과 메타데이터 표준을 통해 본 한국의 기록·기록기술” 기록학연구 10(2004)

만 해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 발전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어깨에 힘 꽤나 주는 사람들 보다 국민 일반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고,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까지도 국민의 ‘코드’에 맞추어 가야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변화의 뒤에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서러움과 희생이 존재하였다. 이들의 역사를 딛고 민주주의 발전의 성과를 새 시대, 새 세대가 이어가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은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를 확립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 거버넌스(governance)¹⁾의 차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새 시대, 새 세대가 민주주의 발전을 이어가고 있는 한, 혼돈과 가치 전도와 보수의 거대한 저항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거버넌스의 지향성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참여정부도 이러한 새 시대, 새 세대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부이어야 하고, 기록관리 역시 마찬가지로 지어야 할 것이다.

새 시대, 새 세대가 이끌어 가는 민주적 지향은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을 나타낸다. 거대 담론으로서의 민주주의 보다는 구체적 현실로서의 민주주의를 중시하고, 오프라인에서의 함성보다는 온라인 개미군단에 익숙하다. 생활 민주주의, 행위의 질차를 하나씩 민주적으로 바꾸어가는 것, 민주적 문화 등이 관심 대상이며, 아직 충분히 정돈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의 세계에서 이미 이러한 측면들을 현실화시키고

1) 거버넌스의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종합적인 견해는 governing(통치)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공통의 문제’로 정의되어 거버넌스를 공통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조정기제로 보는 관점이다.

Ostrom, V., *Intellectual Crisis in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Tuscaloos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89.; Rhodes, R., The Governance Narrative: Key Findings and Lessons from the ESRC's Whitehall Programme, *Public Administration* 78(2), 2000.; Rhodes, R.,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Bristol, PA: Open University Press, 1997.; Campbell, J.,R. Hollingsworth, & L. Lindberg, *Governance of the American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있다. 국가 영역이 전자정부를 최대의 과제로 설정하고, 민간에서도 전자적 업무절차의 재설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서 찾아진다. 전자적 환경이 보편화 된다는 것은 거버넌스를 실현할 기제가 고도화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민의 정부 때 기록관리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민주주의의 발전이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이 투명한 공공행위를 점점 더 강하게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와 맞물려 기록관리가 주목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기록관리법이 만들어진 것은 단지 몇몇 사람의 능력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시대 흐름이 배경에 있음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기록관리법은 투명한 행정행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각종 기록관리기관의 설립, 등록 강제, 분류기준표 등의 내용이 법 규정 속에 반영됨으로써, 기존의 공문서관리의 구태는 치유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법의 온전한 시행을 이뤄내지는 못하였지만 기록관리법이야말로 시대적 요구에 응한 행정 개혁의 한 승리에 틀림없다.

짧은 기간이지만 민주주의 발전의 차원이 한 단계 진전하고, 그 결과 전자적 환경에서 거버넌스를 포함하는 참여와 협치가 요구되고 있다. 청와대가 기록관리 시스템의 전반적 혁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의 정부 시대에 조응하는 기록관리법 체제를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의 수준에 맞추고자 하는 노력의 소산일 것이다. 참여정부의 각종 로드맵이 여러 이유에 의해 현실 속에서 원활히 집행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지향을 그저 가벼운 비판거리로 인식해서도 곤란하다. 더구나 과거의 보수적 관성, 혹은 일정한 정치적 이해로 인해 시스템 개혁의 방향이 퇴색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기록관리법 체제가 지향하던 세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나아가 참여와 협치의 세계, 거버넌스의 세계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 입장이다. 기록관리혁신의 과제와 전망을 논하면서 거버넌스 기록관리를 화두로 던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거버넌스 기록관리의 이슈들

거버넌스 기록관리는 공공행위를 그대로 기록화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실현된다.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 행위의 설명 책임성(accountability)²⁾을 논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설명책임성의 대상이 공공행위를 위임한 국민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기록관리가 공공행위와 국민을 소통시키는 핵심 기재로 작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거버넌스 기록관리의 방법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기록의 진본성(authenticity)과 신뢰성(reliability)의 문제이다. 공공행위의 과정과 결과를 남긴 기록이 신뢰할 만한 진본일 때 비로소 공공행위와 국민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관리법에서는 기록 서식 등은 그대로 둔 채, 생산되는 기록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불법적 과기 등과 같은 잘못된 관행을 치유해갈 것인가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전 발표한 논

2) Hatry, H. P., "We Need a New Concept of Accountability," *The Public Manager*, Vol.26, No.3, 1997, pp.37-42.; Simms, M. "Models of Political Accountability and Concepts of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58, No.1, 1999.; Mulgan, R. "'Accountability': an ever-expanding concept," *Public administration*, Vol.78, No.3, 2000.; Reichard, C., *The Impact of Performance Management o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Public Sector*, *Ethics and Accountability in a Contest of Governance and New Public Management EGPA Annual Conference*, Lauen 1997 IOS Press, 1998.

문³⁾에서 지적한 대로 기록의 진본성과 신뢰성은 결재과정이나 의사결정과정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기록 서식의 개발, 적절한 기록관리 과정의 설계, 이들을 반영한 메타데이터 요소의 설정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거버넌스 기록관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록 서식의 변경을 포함하는 기록관리 혁신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서속성카드를 붙인 기록 서식은 기록의 신뢰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모델이다. 그러나 기록의 서식은 수행되는 업무의 유형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일상적,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와 의사결정과정을 수반하는 프로젝트형 업무의 기록이 같은 서식에 의해 만들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서식 개발을 위해서는 단위업무 하위의 수준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조사, 분석, 유형화하고, 이들 각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기록의 서식을 유형에 맞게 재설계하는 방대한 작업이 요구된다. 대체로 일상형 업무에 적용되는 기록 서식은 경로부를 단순화한 형태가 될 것이고, 프로젝트형 업무에 적용되는 서식은 경로부와 관리속성부가 강화된 형태가 될 것이다.⁴⁾

둘째, 기록관리 프로세스 설계 시 공개와 관련된 시점 역시 주요 이슈이다. 지금까지의 기록관리는 말 그대로 기록을 행정적 관점, 조금 더 나아가간다면 역사 문화적 관점에서 관리함을 뜻하였다. 하지만 거버넌스 기록관리의 주요 목적은 국민과의 기록을 통한 소통이다. 따라서 기록의 공개를 기록의 생산, 관리프로세스의 일정한 시점에 적절한 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록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정보공개법은 기록의 공개여부 판정을 생산 시점

3) 김익한, “기록의 속성과 메타데이터 표준을 통해 본 한국의 기록·기록기술,” 『기록학연구』10호, 2004.

4) 문서관리카드의 경로부, 관리속성부 등에 대해서는 김익한, “기록의 속성과 메타데이터 표준을 통해 본 한국의 기록·기록기술,” 『기록학연구』10호, 참조.

에서 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공개가 요청된 시점에 이를 재검토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 상 공개의 제한이 확대되는 경향을 초래하고 있다. 업무가 수행과정 중에 있을 때, 업무 수행이 종료된 이후의 공개 여부 판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각 시점에 따라 적절한 공개여부 판정을 지속적으로 내림으로써 기록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이 활발해질 수 있는 것이다. 적어도 업무 진행 중, 업무 종료 후, 자료관 이관 후, 전문관리기관 이관 후, 혹은 10년 등 일정 시점 경과 후에 각각 공개 여부 판정이 달리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이 상호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형으로 재입법 될 필요가 있다. 공개 여부 판정 기준과 관련해서도 업무프로세스 분석에 동반하여 프로세스 별로 공개에 따른 장점과 위험이 함께 분석되고, 이를 아래로부터의 조사방식(bottom up 방식)으로 분석 조정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이렇게 해서 신뢰성 있는 기록의 진본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공개여부 판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공개된다면 기록 이용자인 국민의 기록관리에 대한 개입의 여지가 다양한 차원에서 마련되게 될 것이다. 이 점이 거버넌스 기록관리의 또 다른 장점이자 혁신의 핵심 과제이다. 예를 들자면 공개의 범위가 광범위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본다면 국민은 온라인을 통해 국정 수행과 관련된 기록들을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적 데이터(audit trail)를 집적하여 기록의 이용도 평가를 하고 이를 기록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기록이 행위의 과정과 결과의 반영물이라면 기록 속의 내용이 곧 업무 지식이 될 수 있고, 따라서 기록관리시스템(RMS)에서 지식관리시스템으로의 데이터 이관 등도 앞으로 구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용자인 국민의

기록에 대한 접근이 곧 업무지식의 활용도 평가에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거버넌스 기록관리는 기록 공개를 전제로 하면서 국민들의 기록관리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넷째, 업무관리와 기록관리를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론을 고려하는 일이 필요하다. 모두가 알다시피 최신의 기록관리 이론은 업무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분류체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기록에 대한 평가도 단위업무 내지는 기능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가 업무관리영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본래적으로 업무와 기록이 하나의 짝을 이루는 관계에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스런 것으로, 전산적 처리 방식이 발달하면서 이를 구현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 가속화되는 현상이다. 시스템적으로 볼 때, 업무과정을 분석, 재설계하고 업무분류표를 작성하여, 업무에 의해 발생하는 기록을 이 분류표에 연동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와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업무 쪽으로는 개인업무카드 및 인사 평정 등이 확대 발전 가능할 것이고, 기록 쪽으로는 지식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이 확대 발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업무과정을 기축으로 하는 정보(process bound information)⁵⁾의 개념이 학계에서 주목받는 것 역시 같은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할 때 옴부즈만(ombudsman)⁶⁾의

5) Themassen, T. "The Development of an Archival Science and its European Dimension," *The Archivist and the Archival Science*, Seminar for Anna Christina Ulfsparré, Lund: Landarkivet, 1999.

6) 표명선, "한국형 옴부즈만(Ombudsman)제도의 과제와 전망," 『강남대학교논문집』33, 강남대, 1999; 이경원, "옴부즈만 제도의 활용과 개선방안," 『동아시아 연구논총』10,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99; 전학선, "프랑스의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9(4), 한국헌법학회, 2003; 홍성필, "한국형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연구," 『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배상진, "효율적 행정통제를 위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옴부즈만 역

기능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끝으로 거버넌스 기록관리의 1차원과 국민 참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영국의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에서 시행하고 있는 컨설팅(consultation)제도⁷⁾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의사결정에 국민 참여가 필요한 사안을 평가하여 관련 기록 혹은 가공된 기록을 온라인상에 공표하고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가 이미 시행중에 있다. 이는 기록을 매개로 한 거버넌스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기록의 단계별 공개평가에 더하여 해당 업무의 질과 성격을 평가하고 관련 기록을 온라인에 공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등의 구상이 새로운 기록관리 체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렇게 해서 형성된 국민 참여의 내용 역시 관련 기록과 함께 분류 관리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기록관리 주체, 주체간의 관계의 측면에서도 거버넌스 기록관리의 관점은 중요하다. 그간 기록관리기관의 관계구조, 혹은 존재형태에 대한 논의는 집중형, 분산형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왔다. 기록관리법이 각급 기관에 중간단계의 기록관리기관으로 자료관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중앙기관에서 통제하게 한 것은 집중형 기록관리의 전형을 실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체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다음과 같은 이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기록 자치의 문제이다. 거버넌스가 참여와 자치를 전제로 한

할,” 『진리논단』, 천안대학교, 1999; 김영중, “위원회 조직의 노동복지정책 결정참여과정 분석,” 『복지행정논총』, 13(1), 한국복지행정학회, 2003.

7) 컨설팅(consultation)이란 정부의 업무처리과정에 국민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대두되었다. 이는 개방된 정부를 표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과 이익단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이를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Code of Practice on Consultation*, [cited 2005.3.2], (<http://www.consultations.gov.uk/oc/consultationindex.nsf/Content>)

개념이라면 거버넌스 기록관리 역시 분권적 기록관리를 기본으로 한다. 그간 기록관리법에서는 각급 기관, 혹은 지방자치체가 스스로 새로운 기록관리를 영위해갈 역량과 조건을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중앙기관에서 이들의 역할을 상당부분 대행하도록 하였다. 영구보존기록의 자체관리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이를 중앙기관에서 집중 수집하여 관리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것이 기존의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역량과 조건에 대해서는 관점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다. 지자체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형태, 스타일, 규모의 기록관리기관을 자율적으로 설립하게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역량, 조건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간의 민주적 변화와 자치분권운동의 성장을 기반으로 하여 지자체 스스로의 필요와 역량에 의해 기록관리기관을 설립 운영하게 하는 일이 지방 기록관리기관의 설립 운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중앙에서의 기록관리기관 설립 강제가 그동안 충분히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기관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중앙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이뤄진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주민과의 협치를 전제로 한 지역 운영이 기반이 된다면 기록관리 혁신은 지자체의 핵심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필요를 토대로 기록관리기관 설립을 촉진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 방안일 수 있음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기록관리와 관련된 지역의 여러 기구들이 함께 참여하여 기록관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거버넌스 기록관리에 걸 맞는 기구 형태의 문제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거버넌스 기록관리의 요체는 주민 참여이므로 이를 기구 형태에 충분히 반영하는 구상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기록관리가 공공 행위를 혁신해가는 핵심 기재라는 측면 또한 기구 형태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기록관리법에서는 총무부서 등에 기록관리기관을 소속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보면 적절하지 못하다. 총무부서는 행정적 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부서이므로 기존의 기구 구상이 철저히 행정적 관점에 입각해 있음을 말해준다. 거버넌스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 혁신을 추진하는 기구, 예를 들어 혁신담당관실과 같은 기구와 기록관리기구가 긴밀한 연계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읍부즈만이나 위원회 등과 같이 참여를 주도하는 기구 역시 기록관리기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지자체의 고유 특성에 따라 정해질 일이지만, 예를 들어, ‘업무 및 기록혁신위원회→혁신담당관실, 기록담당관실’을 의사결정기구로 두고 기록의 보존관리와 각종 문화 서비스,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록관을 집행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기구 역시 거버넌스 기록관리에 적합한 형태로 구상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거버넌스 기록관리가 정보공개를 포함하는 국민과의 소통 기재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적어도 기록관리기능과 정보공개기능이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사결정의 과정이 국민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하므로 위원회의 형태를 띤 기구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직 설익은 구상이기는 하지만 거버넌스 기록관리를 실현할 국가기구의 구성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대통령 직속 장관급)/상임위원/국단위 실행기구/통합서비스센터, 표준화연구센터, 역사기록연구센터 등과 같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위상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거버넌스 기록관리의 체제는 네트워크에 의해 유지, 발전되어 가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해두지 않을 수 없다.⁸⁾ 그간의 관점이 규제와 명령하달에 의해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을 기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었다면, 거버넌스의 관점은 자율과 참여와 네트워크에 의해 운영의 조화와 상호연계성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분권화를 전제로 한 지역 특성의 기록관리기구,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기구, 국가기구, 기타 자발적인 수집 기록관리기구 등이 주민 참여에 의한 역동적인 운영, 스스로의 현실에 맞는 자율적 운영,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조화와 상호연계성의 확보를 기함으로써 거버넌스 기록관리를 실현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현실을 바라보는 눈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다양성을 조화와 협치의 힘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요구된다. 그간 기록관리법을 토대로 하여 이룩한 기록관리의 발전을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가야 할 때다. 발전을 향한 다양한 시각이 가감 없이 제출되고 조화와 협치의 지혜를 통해 이를 실천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과제로 남아있다. 거버넌스라는 화두가 이러한 과제를 풀어가는 방향타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을지는 말할 나위도 없다.



8) Rhodes, R., The Governance Narrative: Key Findings and Lessons from the ESRC's Whitehall Programme, *Public Administration* 78(2), 2000.; 이명석, “거버넌스의 개념화: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36(4), p.325, 한국행정학회, 2002.

Abstract

The task and view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reform - Governance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Kim, Ik-han

This paper aims to consider governance and governance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uggested with democracy development. And there are some issues like that.

First, it's an issue of authenticity and reliability. Authenticity means that records can be proven to be what it purports to be, to have been created or sent by the person purported to have created or sent it, and to have been created or sent at the time purported. Reliability means that the contents of the records can be trusted as a full and accurate representation of the transactions, activities or facts to which they attest and can be depended upon in the course of subsequent transactions or activities. Second, it's a problem of a point of time related opening when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process has designed. Third, there is an issue that a people can related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or not. Fourth, it's to consider systematic methodology for achieving business management and records management. And last, it's a topic of relation governance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nd the nation's participation.